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람	



제 661 호

2005년 11월 8일 화요일

차 례

조 례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786호(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 3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787호(인천광역시남동구부업대학생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 8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788호(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 11

공 고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5-772호(방치차량강제처리공시송달공고) 24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5-777호((긴급)물품구매입찰공고(구월2동청사신축수배전반제작구매)) 32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5-778호(공사입찰공고(긴급)(간석시장공중화장실설치공사)) 33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5-780호(인천광역시남동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 관한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36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5-781호(남동공단상징조형물현상공모공고) 42

고 시

-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 제2005-51호(행정처분고시) 46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 남동구

편집 : 문화홍보실

조 례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5년 11월 8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 제 786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근무시간) ①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5조의 제목중 “공휴일근무”를 “공휴일 등 근무”로 하고, 동조제1항중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를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로, “공

휴일”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하며, 동조제2항 중 “공휴일”을 각각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구청장은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의2를 삭제한다.

제19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구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당해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6항 내지 제9항을 각각 삭제한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중 “공휴일”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하고, 동조 본문중 “공휴일”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구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혼	본인	7
출산	배우자	3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비고 :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 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 제안이유

-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조정하고,
- 민원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무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 40시간 근무제의 실시 등(안 제13조)

지방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1시간의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나. 시간외근무 등을 명할 수 있는 요건 완화(안 제15조)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외근무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다.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기관 확대(안 제16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의 경우에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라. 특별휴가의 조정(안 제23조)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중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포상휴가·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며,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로는 본인의 결혼, 배우자의 출산, 배우자·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의 사망과 관련된 특별휴가를 인정하되, 휴가일수를 축소함.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남동구부업대학생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5년 11월 8일

인천광역시남동구 조례 제 787 호

인천광역시남동구부업대학생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남동구부업대학생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남동구부업대학생운영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부업대학생 운영 조례”로 한다.

제3조 중 “(단, 토요일은 13시까지 근무한다)”를 삭제한다.

제6조 제1항 중 “재학증명서 1통을 첨부한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인터넷 또는 직접”으로 한다.

제6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신청자가 모집정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전원을 선발한다

제6조 제3항 중 “추첨일을 정하여 본인이 직접”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우선 선발하고 나머지 신청자에 대하여 추첨일을 정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별도의 방법에 따라”로 한다.

제6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선발이 확정된 자는 재학증명서 1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부업대학생의 근무시간에 관한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고,
- 부업대학생 선발 방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선발 절차를 명확히 하고 신청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

□ 주요내용

- 토요일 근무시간 삭제 (안 제3조)
- 부업대학생 선발방법 변경(안 제6조)
 - 인터넷 또는 직접 신청접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우선 선발
 - 선발 확정 후 재학증명서 제출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5년 11월 8일

인천광역시남동구 조례 제 788 호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위임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
위임 조례”로 한다

제2조관련 “별표1”, “별표2”, “별표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 고
1.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신고 및 사항 변경 나. 휴업·폐업 신고 다. 시설의 사용제한 금지 및 개수명령 라. 폐쇄, 업무정지 등 처분 마. 보고와 업무검사들 바. 부정의료업자 단속 사. 조산소의 지도의사신고 아. 의료지도원 임명 자.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	의료법 제30조 동법 제33조 동법 제50조 동법 제51조 동법 제49조 동법 제25조 동법 제30조 제7항 동법 제54조 동법 제63조의 2	
2.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운영 나. 지도감독	의료법 제32조의2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 관리에관한규칙 제16조	
3. 안마시술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신고 및 사항변경 나. 지도점검 다. 행정처분	의료법 제61조 안마사에관한규칙제8조 동규칙 제9조	
4. 치과기공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치과기공소 인정 나. 치과기공소에 대한 감독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 동규칙 제5조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 고
5. 안경업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안경업소의 개설 등록 나. 안경업소 등록사항 변경 및 휴·폐업신고 수리 다. 안경업소의 지도감독 라. 안경업소에 대한 시정명령 및 개설등록의 취소 등 마.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 동법 제13조 동법 제15조 동법 제23조, 제24조 동법 제33조, 동법시행규칙 제26조	
6. 약국의 개설등록에 관한 권한 가. 약국의 개설 등록 나. 폐업, 휴업, 재개업 및 변경 신고 다. 등록취소 신고 또는 업무정지 처분	약사법 제16조 동법 제20조 동법 제69조	
7. 대마재배에 관한 권한 가. 허가 및 허가사항변경 신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8. 의료기기 판매업 등에 관한 권한 가. 의료기기판매업등의 신고 나. 의료기기 변경신고 다. 휴·폐업 신고 라. 행정처분	의료기기법 제16조 동법 제11조, 제16조의3 동법 제13조 동법 제32조	
9.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권한 가. 시체해부 나. 시체해부의 명령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조 동법 제6조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 고
10. 국민건강 증진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주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세부 계획수립 및 보고에 관한 업무 나. 건강확인의 내용 및 절차 업무 다. 금연 및 절주운동 등에 관한 업무 라.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마. 보건교육의 실시 등 바. 영양개선에 관한 업무 사. 영양지도원에 대한 임명 아. 구강건강사업에 관한 업무 1)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사업 2) 기타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자. 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한 업무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 동법 제8조 동법 제10조 동법 제12조 동법 제15조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동법 제18조 동법시행령 제23조 동법 제19조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 고
11. 전염병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전염병예방 및 관리대책 수립 나. 전염병환자등의 보호 및 진료 다. 전염병에 관한 교육홍보 라. 전염병 정보의 분석 및 제공 마. 전염병 조사 및 연구 바. 전염병병원체 검사.보존. 관리 및 약재내성감시 사. 건강진단등의 명령 아. 전염병예방시설의 설치 자. 공·사립 의료기관대응 차. 전염병환자 격리수용 치료 카. 제1군 전염병 환가에 대한 방역조치 타. 제1군 전염병 예방조치 파. 전염병예방상 필요한 소독 조치 하. 제1군 전염병에 관한 강제 처분	전염병예방법 제3조의2 동법제3조의2 동법제3조의2 동법제3조의2 동법제3조의2 동법제3조의2 동법 제9조, 시행규칙제4조 동법 제23조, 시행규칙제12조 동법 제25조, 시행규칙제14조 동법 제29조, 시행규칙제15조 동법 제37조 동법 제39조 동법 제40조 동법 제42조	
12. 소독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신고 및 신고사항변경 나. 영업의 휴업, 재개업, 폐업신고 다. 영업의 정지명령 등 라. 소독업자에 대한 기타 행정처분 마. 소독업무의 대행 명령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3 동법 제40조의4 동법 제40조의8 동법 제40조의8 동법시행규칙 제20조의9 동법 제40조의2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 고
13. 결핵예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결핵 예방접종의 공고 나. 예방접종증명서 교부 다.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과 보존 및 보고 라. 환자의 취업제한 및 재취업 마. 입원명령 바. 전염성 결핵환자의 의료 시혜	결핵예방법 제15조 동법 제18조 동법 제19조 동법 제23조, 동법 제24조 동법 제25조 동법 제29조	
14. 기생충질환 예방에 관한 권한 가. 수거, 검사	기생충질환예방법 제4조	
15.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감염자의 보호·관리를 위한 대책수립 나. 검진 및 역학조사 다. 치료지시 라. 감염자의 강제 처분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3조 동법 제10조, 동법시행규칙 제4조 동법 제14조 동법 제15조	
16. 전염병 예방접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정기 또는 임시 예방접종 나. 예방접종의 공고 다. 예방접종의 증명서교부 라.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작성 보관 및 보고 마. 예방접종약등의 용도 변경 및 폐기처분 바. 예방접종완료여부의 확인	전염병예방법 제11조, 제12조 동법 제13조, 시행규칙 제5조 동법 제20조, 시행규칙 제9조 동법 제21조,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10조의2 동법시행령 제4조의2 동법 제21조의3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 고
17.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모자보건수첩 발급 나. 임신부·영유아·미숙아 등 건강관리 등 다. 임신부 안전분만 조치 라. 피임시술 및 피임약제의 보급 마. 안전분만조치, 피임시술 및 피임약제 보급에 따른 비용징수 바. 과태료 부과·징수	모자보건법 제9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 동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13조, 동법 제11조 동법 제12조, 동법시행규칙 제8조 동법 제23조 동법 제27조, 동법시행령제22조	
18. 암관리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암관리세부집행계획 수립 나. 말기암환자 관리사업	암관리사업법 제3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동법시행규칙 제9조	
19. 치매관리사업에관한 다음의 권한 가. 치매관리사업	노인복지법 제29조	
20. 위생분야 종사자등이 건강진단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수시건강진단 실시	위생분야종사자등의 건강진단규칙 제5조	
21.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세탁물 처리업 신고 나. 지도 및 보고	의료법 제17조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 제7조 동규칙 제18조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 고
22. 정신보건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정신의료기관 허가취소 또는 폐쇄 나. 과징금처분 다. 사회복지시설 설치신고 라. 사회복지시설의 폐지·휴지·재개 신고 마. 사회복지시설의 폐쇄 등 바. 청문 사. 보고·검사 등 아. 과태료 부과·징수 자. 퇴원자 일시적 보호조치 차. 정신보건자문의 위촉	정신보건법 제12조 동법 제12조의2,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2 동법 제15조, 동법시행규칙 제8조 동법 제17조, 동법시행규칙 제13조 동법 제18조, 동법시행규칙 제11조 동법 제20조 동법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21조 동법 제59조, 동법시행령 제25조 동법시행령 제5조 동법시행규칙 제5조	

[별표2]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 고
1. 지방세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발급	지방세법 제38조	
2. 건축물의 정화조 및 오수 처리 시설에 대한 다음의 사무 가. 지도감독, 법령 또는 명령 위반에 대한 조치 나. 건축관련규정에 의하여 권한 위임된 건축물의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설치(변경) 신고 수리 및 준공검사 다. 기술관리인 선임신고 등의 수리 라. 업무처리실적 보고 및 검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 제14조 동법 제9조 내지 제10조 제12조 동법 제42조 동법 제46조	
3.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사업장폐기물 관리사무	폐기물관리법 제2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4. 폐기물관리에 관한 사무	폐기물관리법 제12조	
5. 보고·검사등에 관한 사무	폐기물관리법 제43조	
6. 과태료부과, 징수에 관한 사무	폐기물관리법 제63조	
7. 공단중소기업관리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법률 제40조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 고
8. 토목공사의 설계 및 유지관리	도로법 제24조	
9.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정비	도로법 제47조	
10. 불법광고물 정비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불법광고물 단속 정비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0조	
11. 연면적 1,650㎡이하인 건축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건축허가(대수선·건축물의 용도변경 및 설계변경 포함) 나. 착공신고 등 및 사용승인 다. 건축물의 철거 등의 신고의 신고 라. 건축신고(85㎡이하) 마.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및 존치기간 연장신고 바. 건축물대장관리 및 등본 발급	건축법 제8조, 제14조 동법 제16조, 제18조 건축법 제27조 동법 제9조 동법 제15조 건축법 제29조	

[별표3]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 고
1.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사무 가. .전산정보처리조직의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나.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 다. 주민등록 전산정보 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사항	주민등록법 제2조 주민등록법 제7조의 2 동법 제17조의8 동법 제18조의 2	
2. 지방세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세 목 별 과 세(납 세) 증명서 발급	지방세법 제38조	
3. 구호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요보호자(국민기초수급자,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조사 나. 수급권자 조사결과대장 작성 비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제23조, 제24조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0 아동복지법 제30조 모 · 부자복지법 제10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제7항, 제26조, 동법 제27조	
4. 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	의료급여법 제8조 3항	
5. 매 · 화장 및 개장 신고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 고
6. 폐기물봉투 및 대형 폐기물 스티커의 공급 및 판매	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 제12조	
7. 불법쓰레기 지도 단속 (과태료 부과)	폐기물관리법 제63조	
8. 무단방치쓰레기 처리	폐기물관리법 제13조	

□ 제안이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등 사회복지 관련법의 개정, 보건·의료관련 법률의 개정 등에 따른 사무위임 사항 및 용어를 정비코자 함

□ 주요내용

- 제2조 관련 “별표1”, “별표2”, “별표3” 중에서
 - 자치법규로 규정한 사항 삭제
 - 직원복무에 관한 사항(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 물품불용에 관한 사항(인천광역시 남동구 물품관리조례)
 - 구청장이 직속기관 및 하부기관에 위임하는 사항이므로 별표에서 부서별 표시 삭제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 2005 - 772 호

방치차량 강제처리 공시송달 공고

우리구 관내에 무단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의거 자진처리를 명령하오니 차량소유자는 공고기간 이내에 자진폐차 및 자진회수 하시기 바라며, 만일 기간내에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 해당차량은 강제처리(폐차·말소)됨은 물론 차량소유자에 대하여는 동법 제85조에 의거 범칙금부과(100~150만원) 또는 동법 제88조에 의거 형사고발(1년 이하의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벌금)됨을 알려드립니다.

2005년 11월 7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05. 11. 7.~2005. 11. 21.
2. 강제처리(강제폐차·말소 및 범칙처분) : 2005. 11. 21.이후
3. 폐차예정장소
 - 인천폐차사업소 (인천.남동구 논현동 423-2 ☎032-814-7077)
 - (주)서울폐차사업소 (인천.남동구 고잔동 184 ☎032-442-6660)
 - 기전산업(주)폐차사업소 (인천.남동구 고잔동 726-7 ☎032-814-4400)
4. 대상차량 : 경기89라2900 외 12대 (내역별첨)
5. 문 의 처 : 남동구청 교통과 차량관리팀(☎ 032-453-2750~4)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한 공시송달은 공고로 갈음합니다.

방치차량 강제처리 공시송달 공고조서

연번	방치차량			소유주		보관장소
	차량번호	차명	방치장소	성명	주소	
457	경기89라2900	포터	간석1동 한진@6동 옆 도로	주-영진건설중기	경기 시흥시 신천동744-2호 원광빌딩302호	기전폐차영업소
458	경기79나2363	스타렉스	구월1동1124-5 승리자동차공업사 옆	주-신원피앤씨	경기 김포시 문양동557-2호	기전폐차영업소
468	인천30구8272	소나타3	간석4동616번지 영남@후문 옆	김현구	인천 남동구 간석4동617-62호 간석빌라1/202호	서울폐차영업소
472	인천35녀4422	세피아	구월3동1356-7호 앞	박현진	인천 남동구 구월3동1345번지	인천폐차영업소
475	서울8수4741	타우너	구월3동1117-9호 앞	유병택	서울 관악구 신림동1583-14호	인천폐차영업소
478	인천82나4041	프론티어	남동공단117BL-2LT 앞	주-한일	인천 남동구 남동공단114BL-4LT	인천폐차영업소
480	인천3디5084	프린스	만수6동 진흥@상가 앞	박주홍	인천 남동구 만수6동 뉴서울@106/715호	인천폐차영업소
482	충남39가1125	그랜저	간석3동176-10 남일프라자 지하주차장 내	서영식	경기 광명시 철산동467-68호 서울연립 나/301호	인천폐차영업소
483	인천31디9077	프린스	간석3동176-10 남일프라자 지하주차장 내	여제식	인천 남동구 만수동1005 주공@808/807호	인천폐차영업소
484	인천31녀2936	프린스	간석3동176-10 남일프라자 지하주차장 내	박옥선	인천 동구 화수동4-15호 소망그린빌라201호	인천폐차영업소
487	경기80가1937	포터	남동구 만수주공@5단지 502동 주차장 내	주-세르엔지니어링	경기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588번지	인천폐차영업소
496	인천31녀1808	소나타	간석3동 두진@후문 경비실 옆	정송근	인천 남동구 구월동1103-6호	기전폐차영업소
498	인천33도9685	에스페로	간석3동102-3 영보유치원 담옆	박재정	인천 부평구 심정동349-4호	기전폐차영업소

이해관계인 명부

연번	차량번호	차명	소유주	이해관계인
830	인천5더1931	그레이스	이상근	강원 속초시청(교행)
04-245	인천35가2834	그랜저	김광태	강원 춘천시청(교통)
04-245	인천35가2834	그랜저	김광태	경기 과천시청(산경)
804	경기33가5515	그랜저	현문조	경기 광명시청(교행)
817	서울81모8831	봉고프런티어	신일금형산업㈜	
841	인천7도4179	그레이스	우영덕	
834	서울51너1650	프린스	임영문	경기 구리시청(교행)
826	인천31로7951	세피아	임영원	경기 김포시청(교통)
824	인천33러1862	캐피탈	박상순	경기 부천시 교통지도사업소(교지)
803	경기75가1672	베스타	정순옥	경기 부천시 소사구청(지경)
830	인천5더1931	그레이스	이상근	
831	경기83거7200	베스타밴	김학근	경기 부천시 오정구청(환위)
03-760	인천34다5725	그랜저	김완호	경기 부천시 원미구청(지경)
814	인천30루1091	레간자	무상희	
803	경기75가1672	베스타	정순옥	경기 부천시청 교통지도사업소(교지)
826	인천31로7951	세피아	임영원	경기 부천시청(교지)
841	인천7도4179	그레이스	우영덕	
803	경기75가1672	베스타	정순옥	경기 부천시청(교통)
831	경기83거7200	베스타밴	김학근	경기 부천시청(민원, 징수)
804	경기33가5515	그랜저	현문조	경기 성남시 수정구청(세무)
834	서울51너1650	프린스	임영문	경기 성남시 중원구청(건설)
804	경기33가5515	그랜저	현문조	경기 성남시차량등록사업소(차량)
850	경기3보1010	그랜저	㈜삼원기공	경기 수원남부경찰서(교통)
850	경기3보1010	그랜저	㈜삼원기공	경기 수원시 권선구청(사산)
815	경남43가2330	티코	김성수	경기 수원시 팔달구청(사산)
850	경기3보1010	그랜저	㈜삼원기공	경기 수원시 팔달구청(세무, 환위)
850	경기3보1010	그랜저	㈜삼원기공	경기 수원시차량등록사업소장(차량)
803	경기75가1672	베스타	정순옥	경기 시흥시차량등록사업소(차량)
803	경기75가1672	베스타	정순옥	경기 시흥시청(환경, 세무)
834	서울51너1650	프린스	임영문	경기 안산시 단원구청(산교)
809	인천80마6760	그레이스밴	조창수	경기 안산시청(교통)
817	서울81모8831	봉고프런티어	신일금형산업㈜	경기 평택시 송탄출장소(송지)
813	경기4오2048	엘란트라	정희재	경기 하남시청(세무)
813	경기4오2048	엘란트라	정희재	경기광주경찰서(교통)
803	경기75가1672	베스타	정순옥	경기사흥경찰서(교통)
809	인천80마6760	그레이스밴	조창수	경남 김해시청(교행)
815	경남43가2330	티코	김성수	경남 마산시청(교행)
815	경남43가2330	티코	김성수	경남 창원군청(지경, 재무, 민원)
815	경남43가2330	티코	김성수	경남창녕경찰서(교통)
816	서울2루4856	르망	이기호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서부지사(지관1621-1676)
817	서울81모8831	봉고프런티어	신일금형산업㈜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로지사(직관1621-1087)
819	인천80마7661	베스타밴	배성렬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동지사(자정1621-2203)

이해관계인 명부

연번	차량번호	차명	소유주	이해관계인
809	인천80마6760	그레이스밴	조창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동지사(자정1621-1081)
814	인천30루1091	레간자	우상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동지사(자정1621-2203)
804	경기33가5515	그랜저	현문조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동지사(자정1621-2528)
841	인천7도4179	그레이스	우영덕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부지사(지관1621-1232)
821	인천80마6999	포터슈퍼밴	김덕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부지사(지관1621-1277)
841	인천7도4179	그레이스	우영덕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서부지사(정급1621-1321)
04-245	인천35가2834	그랜저	김광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서부지사(정급63310-10288)
826	인천31로7951	세피아	임영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중부지사(자정1621-452)
03-1133	인천4가7038	엑셀	이항규	국민건강보험공단 중랑지사(자정1621-921)
840	서울85다5126	와이드봉고	엄상철	국민연금관리공단 강서양천지사(가일52104-618)
817	서울81모8831	봉고프런티어	신일금형산업㈜	국민연금관리공단 구로금천지사(가일52104-1347)
835	인천34머8347	베르나	조용갑	국민연금관리공단 북인천지사(가일52104-233)
850	경기3보1010	그랜저	㈜삼원기공	국민연금관리공단 수원지사(가일52104-336)
847	인천31더3802	엑센트	동양석재㈜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정수6508-115115)
841	인천7도4179	그레이스	우영덕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정수6508-24085)
817	서울81모8831	봉고프런티어	신일금형산업㈜	근로복지공단 서울관악지사(정수6508-141105)
804	경기33가5515	그랜저	현문조	부산 해운대구청(교통)
04-245	인천35가2834	그랜저	김광태	서울 강남구청(교지)
816	서울2루4856	르망	이기호	
834	서울51너1650	프린스	임영문	
819	인천80마7661	베스타밴	배성렬	서울 강동구청(교통)
836	인천32마1087	쏘나타2	허진석	서울 강서구청(주차)
04-245	인천35가2834	그랜저	김광태	서울 관악구청(교지)
802	인천4거2548	시에로	허은하	
840	서울85다5126	와이드봉고	엄상철	
03-1133	인천4가7038	엑셀	이항규	서울 관악구청(세이, 교행)
822	서울50너1865	쏘나타	서귀석	서울 관악구청(세이, 교행)
04-245	인천35가2834	그랜저	김광태	서울 광진구청(교지)
825	인천35가7432	아벨라	조성철	서울 구로구청(교행)
816	서울2루4856	르망	이기호	
804	경기33가5515	그랜저	현문조	
834	서울51너1650	프린스	임영문	
840	서울85다5126	와이드봉고	엄상철	서울 금천구청(교행, 산환, 세이)
817	서울81모8831	봉고프런티어	신일금형산업㈜	
816	서울2루4856	르망	이기호	서울 금천구청(세관, 교지)
813	경기4오2048	엘란트라	정희재	서울 노원구청(교지)
813	경기4오2048	엘란트라	정희재	서울 동대문구청(교관)
04-245	인천35가2834	그랜저	김광태	서울 동작구 상도동279-379 세정빌라202 문영환
809	인천80마6760	그레이스밴	조창수	서울 동작구청(교지)
814	인천30루1091	레간자	우상희	
839	인천3러9072	르망	최광규	서울 동작구청(세일)
834	서울51너1650	프린스	임영문	

이해관계인 명부

연번	차량번호	차명	소유주	이해관계인
04-245	인천35가2834	그랜저	김광태	서울 마포구청(교지)
839	인천3러9072	르망	최광규	
04-245	인천35가2834	그랜저	김광태	서울 서초구 방배동935-34 외환신용카드㈜
819	인천80마7661	베스타벤	배성렬	서울 서초구청(교지)
834	서울51너1650	프린스	임영문	서울 서초구청(교지,세이)
803	경기75가1672	베스타	정순옥	서울 서초구청(교행)
816	서울2루4856	르망	이기호	
839	인천3러9072	르망	최광규	서울 서초구청(주차)
840	서울85다5126	와이드봉고	엄상철	
04-245	인천35가2834	그랜저	김광태	서울 성동구청(교지)
834	서울51너1650	프린스	임영문	서울 성동구청(교행,세이)
825	인천35가7432	아벨라	조성철	서울 성북구청(교통)
813	경기4오2048	엘란트라	정희재	서울 송파구청(교통)
834	서울51너1650	프린스	임영문	
804	경기33가5515	그랜저	현문조	서울 양천구청(교지)
840	서울85다5126	와이드봉고	엄상철	서울 양천구청(세이,환위,교행)
803	경기75가1672	베스타	정순옥	서울 양천구청(환위,지교)
806	인천70거3802	타우너	조신영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1 현대캐피탈㈜
835	인천34머8347	베로나	조용갑	
836	인천32마1087	쏘나타2	허진석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1 현대캐피탈㈜
03-1133	인천4가7038	엑셀	이항규	서울 영등포구청(교지)
803	경기75가1672	베스타	정순옥	
806	인천70거3802	타우너	조신영	
813	경기4오2048	엘란트라	정희재	
816	서울2루4856	르망	이기호	
814	인천30투1091	레간자	무상희	서울 용산구청(교지)
834	서울51너1650	프린스	임영문	
04-245	인천35가2834	그랜저	김광태	서울 종로구 연지동136-74 서울보증보험㈜
838	인천31무7531	티코	이춘희	서울 종로구청(교지)
840	서울85다5126	와이드봉고	엄상철	
809	인천80마6760	그레이스벤	조창수	서울 중구청(교지)
816	서울2루4856	르망	이기호	
817	서울81모8831	봉고프린티어	신일금형산업㈜	
839	인천3러9072	르망	최광규	
840	서울85다5126	와이드봉고	엄상철	
834	서울51너1650	프린스	임영문	서울 중랑구청(교지)
03-1133	인천4가7038	엑셀	이항규	
825	인천35가7432	아벨라	조성철	서울남부경찰서(교통)
817	서울81모8831	봉고프린티어	신일금형산업㈜	서울방배경찰서(교통)
834	서울51너1650	프린스	임영문	서울성동경찰서(교통)
834	서울51너1650	프린스	임영문	서울수서경찰서(교통)

이해관계인 명부

연번	차량번호	차명	소유주	이해관계인
840	서울85다5126	와이드봉고	엄상철	서울양천경찰서(교통)
806	인천70거3802	타운너	조신영	서울특별시청(교단)
819	인천80마7661	베스타벤	배성렬	인천 계양구청(교통)
826	인천31로7951	세피아	임영원	
831	경기83거7200	베스타벤	김학근	
841	인천7도4179	그레이스	우영덕	인천 계양구청(교통, 환위)
832	인천7노1597	포터	나석구	인천 계양구청(교통, 환위, 세무)
03-1133	인천4가7038	엑셀	이항규	인천 계양구청(세무)
804	경기33가5515	그랜저	현문조	
03-760	인천34다5725	그랜저	김완호	인천 계양구청(세무, 교통)
804	경기33가5515	그랜저	현문조	인천 남구청(교통)
813	경기4오2048	엘란트라	정희재	인천 남구청(교통)
821	인천80마6999	포터슈퍼캡	김덕수	
822	서울50너1865	쏘나타	서귀석	
835	인천34머8347	베르나	조용갑	
841	인천7도4179	그레이스	우영덕	
847	인천31더3802	엑센트	동양석재㈜	
03-760	인천34다5725	그랜저	김완호	
04-245	인천35가2834	그랜저	김광태	
814	인천30루1091	레간자	우상희	
819	인천80마7661	베스타벤	배성렬	
830	인천5더1931	그레이스	이상근	인천 남구청(지교, 위생)
806	인천70거3802	타운너	조신영	인천 남구청(차량, 세무, 교통)
805	인천7노2913	와이드봉고	김시철	인천 남구청(환위, 차량, 세무, 교통)
824	인천33러1862	캐피탈	박상순	인천 남동경찰서(교통)
825	인천35가7432	아벨라	조성철	
839	인천3러9072	르망	최광규	인천 남동구 만수동980 한성종합관리㈜
03-760	인천34다5725	그랜저	김완호	인천 남동구청(교통)
805	인천7노2913	와이드봉고	김시철	
806	인천70거3802	타운너	조신영	
813	경기4오2048	엘란트라	정희재	
814	인천30루1091	레간자	우상희	
822	서울50너1865	쏘나타	서귀석	
824	인천33러1862	캐피탈	박상순	
826	인천31로7951	세피아	임영원	
830	인천5더1931	그레이스	이상근	
831	경기83거7200	베스타벤	김학근	
832	인천7노1597	포터	나석구	
841	인천7도4179	그레이스	우영덕	
850	경기3보1010	그랜저	㈜삼원기공	
802	인천4거2548	시에로	허은하	
838	인천31루7531	티코	이춘희	인천 남동구청(교통, 세무)

이해관계인 명부

연번	차량번호	차명	소유주	이해관계인
847	인천31더3802	엑센트	동양석재(주)	
836	인천32마1087	쏘나타2	허진석	인천 남동구청(세무)
03-1133	인천4가7038	엑셀	이항규	인천 남동구청(세무,교통)
819	인천80마7661	베스타벤	배성렬	인천 남동구청(세무,환위)
04-348	인천82라5966	점보타이탄	박삼선	
808	인천70다9118	그레이스	김호진	인천 남동구청(세무,환위,교통,차량)
839	인천3러9072	르망	최광규	인천 남동구청(징수,교통)
825	인천35가7432	아멜라	조성철	인천 남동구청(징수,교통,차량)
821	인천80마6999	포터슈퍼캡	김덕수	인천 남동구청(환위,세무,교통)
809	인천80마6760	그레이스벤	조창수	인천 남동구청(환위,차량,세무,총무,교통)
830	인천5더1931	그레이스	이상근	인천 동구청(건교)
826	인천31로7951	세피아	임영원	인천 동구청(건교,세무,차량)
03-1133	인천4가7038	엑셀	이항규	인천 동구청(지교)
04-245	인천35가2834	그랜저	김광태	
813	경기4오2048	엘란트라	정희재	인천 부평구청(교행)
819	인천80마7661	베스타벤	배성렬	
821	인천80마6999	포터슈퍼캡	김덕수	
831	경기83가7200	베스타벤	김학근	
832	인천7노1597	포터	나석구	
839	인천3러9072	르망	최광규	인천 부평구청(교행,차량)
841	인천7도4179	그레이스	우영덕	인천 부평구청(교행,환위,시세)
835	인천34머8347	베르나	조용갑	인천 부평구청(세무)
824	인천33러1862	캐피탈	박상순	인천 부평구청(세무,교통)
03-760	인천34다5725	그랜저	김완호	인천 부평구청(지교)
805	인천7노2913	와이드봉고	김시철	인천 부평구청(환보,지교)
802	인천4거2548	시에로	허은하	인천 서구청(교통)
826	인천31로7951	세피아	임영원	
830	인천5더1931	그레이스	이상근	인천 서구청(교통,세무,환위)
841	인천7도4179	그레이스	우영덕	인천 서구청(교통,환위)
847	인천31더3802	엑센트	동양석재(주)	인천 서구청(교행)
04-245	인천35가2834	그랜저	김광태	인천 서구청(세무,교통)
03-1133	인천4가7038	엑셀	이항규	인천 서구청(지교)
814	인천30루1091	레간자	우상희	인천 연수경찰서(교통)
804	경기33가5515	그랜저	현문조	인천 연수구청(세무)
826	인천31로7951	세피아	임영원	
830	인천5더1931	그레이스	이상근	인천 연수구청(지교)
841	인천7도4179	그레이스	우영덕	
814	인천30루1091	레간자	우상희	인천 연수구청(지교,세무)
821	인천80마6999	포터슈퍼캡	김덕수	인천 연수구청(차량)
804	경기33가5515	그랜저	현문조	인천 중구청(교육)
847	인천31더3802	엑센트	동양석재(주)	인천 중구청(교통)
03-760	인천34다5725	그랜저	김완호	인천 중구청(지교)

이해관계인 명부

연번	차량번호	차명	소유주	이해관계인
03-760	인천34다5725	그랜저	김완호	인천계양경찰서(교통)
04-245	인천35가2834	그랜저	김광태	
832	인천7노1597	포터	나석구	
03-760	인천34다5725	그랜저	김완호	인천광역시청(교기)
830	인천5더1931	그레이스	이상근	
805	인천7노2913	와이드볼고	김시철	인천광역시청(교지)
809	인천70다9119	그레이스	김효진	
819	인천80마7661	베스타벤	배성렬	
824	인천33러1862	캐피탈	박상순	
825	인천35가7432	아벨라	조성철	인천광역시청(주관)
813	경기4오2048	엘란트라	정희재	
840	서울85다5126	와이드볼고	엄상철	
809	인천80마6760	그레이스벤	조창수	인천남동경찰서(교통)
819	인천80마7661	베스타벤	배성렬	
847	인천31더3802	엑센트	동양석재㈜	인천동부경찰서(교통)
819	인천80마7661	베스타벤	배성렬	
826	인천31로7951	세피아	임영원	인천부평경찰서(교통)
824	인천33러1862	캐피탈	박상순	
835	인천34머8347	베르나	조용갑	
841	인천7도4179	그레이스	우영덕	인천서부경찰서(교통)
04-245	인천35가2834	그랜저	김광태	
802	인천4거2548	시예로	허은하	인천세무서(징세)
804	경기33가5515	그랜저	현문조	
814	인천30루1091	레간자	우상희	인천시시설관리공단(교통)
819	인천80마7661	베스타벤	배성렬	전북 군산시청(교통)
836	인천32마1087	쏘나타2	허진석	전북 전주시 완산구청(도교)
836	인천32마1087	쏘나타2	허진석	전북부안경찰서(교통)
850	경기3보1010	그랜저	㈜삼원기공	충남 홍성군청(지경)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 2005 - 777 호

(긴 급)물 품 구 매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건 명 : 구월2동 청사신축 『수배전반 제작구매』
- 규격 및 수량 : 규격서 및 시방서 붙임 참조
-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45일 이내
- 구입기초금액 : ₩50,081,000원(추정가 45,528,180원, 부가세 4,552,820원)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05년11월08일(화)09:00 ~ 11월 14(월)13:00
입찰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 2005년 11월 14일(월)14:00 입찰집행관 PC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 될 수 있습니다.
- 발주부서 및 담당자 : 건축과 공공시설팀 박 인수(☎032-453-2643)

※제품 규격등에관한 문의사항은 발주부서 담당자에게 확인 후 입찰바람

2. 입찰참가자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제14조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업체로 합니다.

3. 입찰의 무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4. 입찰보증금납부 및 귀속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확약서로 갈음하고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5/100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복수예가)이하 최저가낙찰제

6. 낙찰자 통보예정일 : 2005. 11. 17일한

7. 기타 유의사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 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우리 구에서 제시한 시방서, 규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8호 또는 9호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가 되게 입찰을 한 자에 해당 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구 경영재정과(453-2212)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입찰결과는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개찰결과)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005 년 11 월 7 일

인천광역시남동구분임경리관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 2005 - 778 호

공사입찰공고(긴급)**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1.1. 공 사 명 : 간석시장 공중화장실 설치공사
- 1.2. 공사현장 : 남동구 간석동 41-46번지
- 1.3. 공사내용 : 건축공사
 - 대지면적(46.2㎡), 연면적(92.4㎡)
 - 건축공사(설비, 소방, 토목 포함)
- 1.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간
- 1.5. 공사예정금액 : ₩114,015,000원(추정가격 ₩103,650,000원, 부가가치세 ₩10,365,000원)
- 1.6. 기초금액 : ₩114,015,000원입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2.1.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 2.1.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행정자치부예규제160호 2005. 2. 3), 및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161호 2005. 2. 3)이 적용 됩니다.
- 2.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3.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업 중 건축(토목건축)공사업 면허소지업체이어야 합니다.
- 3.2. 모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현재 인천광역시내에 있어야 합니다.
 - ※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3.3.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

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 <http://www.g2b.go.kr>

3.4.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5.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4. 현장설명 일시 와 장소 : 생략

5. 입찰보증금

5.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5.2. 국고귀속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서 제출

6.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전자12140-4, 2002.9.12)제8조에 따라 입찰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2. 제출기간 : 2005. 11. 08.(화) 09:00 ~ 2005. 11. 14(월) 14:00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7.1. 입찰집행(개찰)일시 : 2005. 11. 14(월) 15:00

7.2. 개찰장소 : 인천광역시남동구 경영재정과 입찰집행관PC

7.3. 입찰무효 및 낙찰자결정은 관계법규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7.4.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114,015,000원)의 -3%~+3%범위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천한 추천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7.5.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 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을 통보 받은 날로 부터 5일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 8.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 조건, 설계서, 입찰공고문, 시설공사전자입찰유의서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8.2.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8.3.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5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상당하는 인천광역시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8.4.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G2B) 홈페이지(www.g2b.go.kr)및 우리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찰정보)에 게재됩니다.
- 8.5.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우리구 경영재정과(☎032-453-2212), 공사에 관한 사항은 건축과(☎032-453-26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5. 11. 07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리관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 2005 - 780 호

인천광역시남동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남동구법제사무처리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1월 8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규 칙 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취지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내용에 맞게 정비하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의 명칭을 통일하여 혼란을 방지함은 물론 전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공동주택의 경우 수수료 산정기준시 음식물전용봉투 판매가의 평균값으로 개정함으로써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나아가 환경보전과 구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이 목적임

3. 주요내용 : “ 본문”참조

4.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5년 11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참조 : 청소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453-2415), FAX(453-239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5. .

제 출 자 : 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2004.8.11)과 공동주택관리령이 주택법시행령으로 변경(2003.11.30)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현행규칙의 미비점을 개정·보완하고,
- 공동주택에 대한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부과액 산정기준이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가 제작 판매됨에도 일반종량제 봉투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토록 한 것을 바로잡아 합리적인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며,
-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를 배출규모에 맞게 다양화 하고 개별용기 배치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중간수거용기를 전용수거용기로 변경(안 제2조 제2항 제1호)
- 소규모음식점 100㎡미만 규정을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9조의2에 의거 125㎡미만으로 변경하고, 중간수거용기를 건물별 수거용기로 변경(안 제2조 제2항 제2호)
- 공동주택관리령 제7조를 주택법시행령 제10조로 변경하고, 일반용봉투를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로 변경(안 제3조 제1항 제2호)
- 일반용봉투를 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로 변경(안 제3조 제3호)
- 별표1의 제1호 내지 4호에서 규정된 중간수거용기는 수거용기로 변경하고, “제6호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의 규격은 25ℓ, 40ℓ, 120ℓ로 정한다.”를 신설(안 제2조 관련 별표1)

□ 본문 : 별지 참조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지 참조

□ 참고사항

- 주택법시행령 중 발췌문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중 발췌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인천광역시남동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남동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남동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남동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시행규칙”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분리배출지역 지정 및 배출방법) 제2항 관련 [별표1]중 제1호 내지 제4호의 “중간수거용기”를 “수거용기”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의 규격은 25ℓ, 40ℓ, 120ℓ로 정한다.”

제2조(분리배출지역 지정 및 배출방법) 제2항 제1호 중 “중간수거용기를 비치하고 물기 및 이물질을 제거한 후 음식물류폐기물을 중간수거용기에 직접 배출한다.”를 “전용수거용기를 비치하고 물기 및 이물질을 제거한 후 음식물류폐기물을 비치된 용기에 직접 배출한다.”로 한다.

제2조(분리배출지역 지정 및 배출방법) 제2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단독주택 및 소규모음식점(125㎡미만) : 인근 주변의 적정 위치에 건물별 수거용기를 비치하고 물기 및 이물질을 제거한 후 음식

물전용봉투에 담아 비치된 용기에 배출한다.”

제3조(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 징수)제1항 제2호 중

“공동주택관리령 제7조 규정에서 정한 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서 정한 공동주택”으로 하고, “일반
용 봉투”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로 한다.

제3조(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 징수)제1항 제3호 중

“규정에서 정한 용량별 일반용봉투”는 “규정에서 정한 용량별 음
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신 · 구 조문대비표(제2조 제2항 관련)

현 행	개 정(안)
(별표1)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의 기준(제2조 관련) ☐ 음식물류폐기물 중간수거용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폐기물 <u>중간수거용기</u> 는 악취가 발생되거나 파리·모기 등 해충 및 벌레가 발생·번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u>중간수거용기</u> 의 용량은 충분히 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이 넘치거나 물기가 새어 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u>중간수거용기</u> 의 재질은 음식물류폐기물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손괴되지 않는 재질이어야 한다. 4. <u>중간수거용기</u> 는 위생적이고 수집·운반이 용이하게 제작 되어진 용기이어야 한다. 5. “생략” 6. <u>(신설)</u>	(별표1) ----- ----- ☐ ----- ----- ----- 1.----- <u>수거용기</u> ----- ----- ----- 2. <u>수거용기</u> ----- ----- ----- 3. <u>수거용기</u> ----- ----- ----- 4. <u>수거용기</u> ----- ----- ----- 5. “현행과 같음” 6. <u>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의 규격은 25ℓ, 40ℓ, 120ℓ로 정한다.</u>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 2005 - 781 호

남동공단 상징 조형물 현상공모 공고

인천광역시남동구 남동공단 상징 조형물 설치를 위한 현상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5. 11. 8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공모 개요

- 가. 공 모 명 : 남동공단 상징 조형물 현상공모
- 나. 조형물 설치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남동공단입구】 (위치도별첨)
- 다. 당선작품 수량 : 1점
- 라. 사업규모 : 8차선(보도제외) 도로 구간높이 최소 5미터이상
【야간경관조명 설치】
- 마. 총예정사업비 : 5억7천만원이내(디자인비,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기초토목공사비, 조형물 제작설치비 등 설치까지의 모든 비용 포함)
- 바. 공모대상 : 창작조형물 1식

2. 작품내용

- 도시브랜드와 연계한 조형물
【인천광역시 도시개성창조사업(C·I·P) 및 남동구, 남동공단 이미지 연계】
 - ※ 인천광역시와 남동구의 상징(로고및이미지)은 각각의 홈페이지를 참조바람
- 남동국가산업단지를 상징하는 조형물 설치
 - ※ 글로벌시대의 남동공단 미래 비전 반영
- 새롭게 도약하는 인천의 모습을 상징하는 이미지 연출
- 조형물의 형상은 8차선(보도제외) 도로 구간 조형물로 야간경관조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 구조물의 안전성을 최대한 고려하고 유지관리 비용을 최소
- 설치 목적에 맞는 상징성을 가져야 하며,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선택하여야 한다.

3. 응모자격

가. 공고일 현재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 신고를 필한 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강구조물공사업, 철강재설치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등록을 필한 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① 10년 이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 1억원이상 상징조형물 공모에 당선 되어 제작·설치 경력이 있는 자
- ② 단일 건으로 2억원이상의 조형물을 디자인하여 제작·설치한 경력이 있는 자

나. 응모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자

※ 사업설명회 불참시 작품제출 불가

다. 응모자가 관련법에 의한 시공자격이 없을 경우 시공자격이 있는 사업체와 공동 응모하여야 함.

※ 시공가능 업체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강구조물공사업, 철강재설치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라. 공동으로 참여할 경우에는 위“다”항의 시공 자격을 갖춘 자를 대표자1인으로 선임하고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함

4. 공모일정

1) 공모 공고 ----- 2005.11. 8(화)

-남동구청 홈페이지(<http://www.namdong.go.kr>) 및 구보

남동공단출장소 게시판 공고

2) 응모신청서 교부 --- 2005.11.14(월) ~ 11.15(화)

3) 응모신청서 접수 --- 2005.11.21(월) ~ 11.23(수) 18:00까지

【남동구 남동공단출장소】

- 대리인 참석시 위임장 제출

4) 사업설명회 ----- 2005.11.25(금) 15:00 【남동구 남동공단출장소】

5) 질의응답 ----- 2005.11.28(월) ~ 11.29(화) 【12. 2회 신】

6) 응모작품 접수 ---- 2005.12.28(수) ~ 12.29(목) 18:00까지

【남동구 남동공단출장소】

5. 당선작 발표 : 2006. 1. 13(금) 【예정】

가. 당선자는 개별 통보 및 남동구청 홈페이지 게시

※ 작품심사와 당선작 발표 일정은 우리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은 우리구 홈페이지에 작성하여 공지

나. 선정방법 :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상징성, 작품성, 예술성이 뛰어난 작품을 자체 기준에 의하여 선정

다. 특 전 : 당선자에게 조형물 설계 · 제작 및 설치권 부여

6.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7. 제출도서 반환 기한 : 발표일로부터 5일 이내

8.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우리구 홈페이지 (<http://www.namdong.go.kr>) 현상공모 지침서를 참고 하시고 남동구 남동공단출장소 (☎032-453-28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남동공단 상징 조형물 현상공모 지침서

남동공단 상징 조형물 위치도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 제 2005 - 51 호

행정처분고시

우리구에 등록된 주택관리업자 및 주택임대사업자중 지방세법 제40조에 의거 지방세 3회 이상 체납한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 고시합니다.

2005. 11.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행정처분 내역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사 업 장 소 재 지	처분사유	처분근거	처분내용
인천시남동구- 주택관리업자 - 1	창하주택관리 (이영희)	인천 남동 구월동 1089-3	지방세 3회이상 체납	지방세법 제40조 제2항 및 제4항	주택관리업 등록취소
인천시남동구- 임대사업자 - 82	인명건설	인천 남동 구월1동 1136-10	지방세 3회이상 체납	지방세법 제40조 제2항 및 제4항	주택임대사업 등록취소
인천시남동구- 임대사업자 - 162	박철봉	인천 남동 구월1동 1159-6	지방세 3회이상 체납	지방세법 제40조 제2항 및 제4항	주택임대사업 등록취소
인천시남동구- 임대사업자 - 159	김광열	인천 남동 장수동 580-17	지방세 3회이상 체납	지방세법 제40조 제2항 및 제4항	주택임대사업 등록취소
인천시남동구- 임대사업자 - 219	이상순	인천 남동 남촌동 339-4 대호빌라 B/201	지방세 3회이상 체납	지방세법 제40조 제2항 및 제4항	주택임대사업 등록취소
인천시남동구- 임대사업자 - 138	서선주	인천 남동 만수1동 932-12 태광다세대 라/201	지방세 3회이상 체납	지방세법 제40조 제2항 및 제4항	주택임대사업 등록취소

2. 고지사항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남동구청장을 피청구인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